

의안 번호	제3575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02월 28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03월 1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03월 18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03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저출산·고령화 사회에 따른 교통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, 장기주차 예방을 위한 기준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주차 예방을 위한 주차요금 가산금 산정기준 정비(안 제5조)
- 나. 영유아·임산부·노약자 탑승차량을 위한 가족배려 전용주차 구획 설치 기준 마련 (안 제13조의3)
- 다.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확대(안 제14조의3)
- 라. 주차요금 면제 대상 확대(안 별표1)
- 마. 그 밖에 “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한정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교통 약자 배려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의 이용에 제약이 있으니 향후 주차장 설치시 주차장 공간을 더 확대하고, 가족배려주차장을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시장, 대형마트, 백화점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